

행정권력의 신학적 계보학: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문수**

미셀 푸코가 생각하는 현대의 행정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통치와 인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결합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푸코는 이와 같은 권력의 계보학적 뿌리는 유대교-기독교 전통에서 발현하는 사목권력에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난점을 다른 학자들의 논의를 빌려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근대적 통치성의 전조로서 사목권력을 보는 것의 이론적 의의를 검토한 후에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의 관점을 통해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이 가지는 행정학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목권력에 의해 형성된 고백하는 주체가 현대 행정에서 탈주체화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있고 이에 대한 자식을 고백이나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을 탈주체화시키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윤리적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행정권력이 개인들을 통치의 객체로서 탈-주체화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행정권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다른 역사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었던 역사에 다시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주체를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행정권력, 사목권력, 생명권력, 미셀 푸코

* 본 연구는 본 연구는 2014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141264)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미국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행정윤리 등이다(mslee@cu.ac.kr)

I . 머리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생각하는 현대의 행정권력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통치와 인구 전체에 대한 관리를 결합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고대 중국 사회를 포함한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개인화의 기술과 전체화의 과정을 동일한 정치구조로 통합한” 예는 현대의 행정권력이 유일한 것이다(Foucault, 1982: 213).

개인화와 전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의 행정권력은, 푸코에 따르면, 생명권력(biopower)과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서양에서 이 두 가지 권력은 절대군주의 주권적 권력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개인과 그 집합인 인구에 대한 행정적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형태로 등장하는 권력이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권력은 더 이상 군주 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수단으로 작동하는 부정적, 공제적(deductive) 권력이 아니라 그것들의 양과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 생산적(productive) 권력으로 변환되었다. 현대의 행정권력은 사람들 개개인과 전체로서의 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물학적 삶을 “자극하고, 통제하고, 최적화 시키고, 조직화” 시키면서 그것을 더욱 크고 강하게 만드는 권력인 것이다(Foucault, 1979: 136).

규율권력은 인간 개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행사되는 권력으로 신체의 “규율화, 능력의 최적화 … 유순성과 유용성의 증가 그리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체제에 대한 통합”을 목적으로 행사된다(Foucault, 1977: 139). 푸코에게 서양에서 17세기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규율권력은 전근대적 습성에 젖어있는 개인들의 신체와 정신을 자본주의적 질서에 적응하는 신체와 정신으로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규율권력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생명권력으로 진화하는데, 이 권력은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이다. 규율권력이 개인의 신체를 하나의 기

1) 푸코의 권력에 대한 연구에서 부딪치는 난점 중의 하나는 그의 다양한 권력 개념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사용하는 권력과 관련하여 국가권력, 행정권력, 통치권력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략적 내용을 간추려 본다.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의 차이는 주권적 권력(sovereign power)의 행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국가권력은 주권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행정권력은 주권적 권력에 반하여 출현하는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권력들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사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통치권력은 행정권력으로 대치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의 목표가 통치, 즉 행위에 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계로 보고 행사되는 권력이라면 생명권력은 인구라는 “종적 신체(species body)”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리이다. 결국 생명권력은 인구로 표현되는 종으로서의 집합적 인간을 상대하는 권리으로 이때 특정한 인구는 “번식, 탄생과 죽음, 건강 수준, 기대 수명과 장수”라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통제 가능한 자신만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간주 된다. 푸코는 생명권력의 등장을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률적인 것이 아닌 과학적 범주(종, 인구)가 일관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Dreyfus & Rabinow, 1982: 134).

본 논문은 근대적 행정권력의 존재적 본질을 그것의 규율권력적, 생명권력적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다²⁾. 본 논문은 푸코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종종 언급은 되지만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지 못한 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주제는 생명권력, 규율권력 또는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상징되는 현대의 행정권력의 계보학적 전거는 유대교-기독교적 전통에 있다는 푸코의 주장이다. 푸코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강의, 인터뷰, 기고문 등에서 현대의 행정권력의 계보학적 조상은 유대교-기독교적 사목권력(pastoral power)에서 찾아야 한다는 신선하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푸코에게 현대의 행정권력은 기독교적 사목권력과 같이 구원을 지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두 권리의 차이는 현대 국가에서의 행정권력은 더 이상 “사람들을 내세에서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구원을 보장”하는 권리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푸코(1982: 215)에게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복지주의(welfarism)란 현세에서의 구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것은 “건강, 행복(즉, 충분한 부와 높은 생활수준),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구체적 내용을 지니고 있다. 현대의 행정권력이 한편으로는 인간 개개인의 신체와 영혼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신체로서의 인구를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유대교-기독교적 사목권력으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푸코는 믿고 있는 것이다³⁾.

2) 현대의 행정권력과 생명권력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대표적 연구로는 Baez(2014), Nilson & Wallenstein (2013), Lemke(2011), Prozorov(2007), Catlaw(2007) 등이 있다.

3) 기독교와 푸코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분야의 권위자인 Jeremy Carrette(2013: 371)에 따르면, 푸코가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오직 그것의 권력작용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Carrette는 푸코가 죽을 때까지 가톨릭 신자였고 또 그의 무덤이 가톨릭묘지에 있으며 TV로 교황의 즉위식을 보기 위해서 강의시간도 잊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본 논문 역시 푸코의 종교관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권력비판이론의 관점에서 기독교 사목권력을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하는 문제만을 다

따라서 근대에 출현하는 행정권력의 존재론적 특징을 알고자 하는 학자는 푸코의 위와 같은 주장 즉 근대적 행정권력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사목권력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 그러나 본 연구는 푸코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권력과 사목권력이 계보학적 줄기를 같이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의미를 탈주체화와 진실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쟁점 별로 살펴본 다음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的 결합의 관점에서 사목권력 연구가 주는 현대 행정에 대한 함의를 알아 볼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푸코의 연구에 나타난 사목권력의 본질과 특징을 기독교의 성립 전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논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사목권력이 근대의 행정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힌 다음 현대 행정권력의 계보학적 전조로 사목권력을 간주하는 것이 현재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4장은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가설에 존재하는 쟁점들을 푸코 연구자들의 최근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제 5장은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的 비유를 빌려 사목권력의 행정적 함의를 추적해 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주장의 중요성과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

II. 푸코와 사목권력

《안전, 영토, 인구》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78년의 강의에서 푸코는 근대적 국가와 행정이 어떠한 권력 합리성과 통치기술에 의해서 발생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푸코는 1975년에 출판된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로 들어오면서 권력의 작동방식이 가시적이며 폭력적 처벌이 아닌 감시의 시선의 내면화를 통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규율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지만 많은 좌파 지식인들에 의해서 그는 자본주의적 국가 권력의 계급적 본질을 애써 외면하는 학자로 보였기에

룬다.

4) 여기서 미리 밝혀 둘 것은 16세기 서양에서 사목권력의 기술들이 국가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푸코(2003a: 177)는 기독교의 세속화가 아니라 더욱 깊은 기독교화라고 말한다는 사실이다: “(16세기는) 탈-기독교화의 시작으로 특징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 기독교화(in-depth Christianization)의 단계이다. 종교개혁에서 트렌트 공의회를 거쳐 마녀사냥으로 진행하는 이 시기는 기독교가 개인 존재에 대한 장악을 굳건히 하고 있는 동안 근대 국가가 모습을 갖추는 때이다.”

이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대응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자에게 푸코의 1978년의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푸코의 국가이론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좌파학자들이 침묵하였던 통치(government)와 통치성(governmentality)을 근대국가 탄생의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푸코가 말하는 통치란 자기 자신 또는 타자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를 하면서(conduct of conduct)” 전자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게끔 지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Senellart, 2007: 389). 그래서 통치에는 국가적 수준에서 하는 개인 그리고 전체 인구에 대한 통치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의 통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부장의 통치,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통치를 포함한다. 푸코(2007: 93; 234-37)에 따르면 16세기가 되면서 중앙집권적 절대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 서양세계는 통치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세적 국가권력인 주권(sovereign power)을 근대적 국가권력인 생명권력으로 전환시키면서 새로운 통치성의 시대를 열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사목권력에 있다고 푸코는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탄생을 주제로 선택한 1978년의 강의의 상당 부분을 사목권력에 할애하고 있다고 우리는 푸코가 신학적 이론이나 교리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들은 몇 해 전에 그가 수행하였던 규율권력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푸코는 사목권력을 계보학적으로 추적하면서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교리학적 주장 아래에서 그것이 말해지고 실행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던 권력의 분석론(analytic of power)을 찾고자한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개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논쟁과 그것들의 제도적 결과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던 권력기술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푸코의 연구가 고대 히브리 종교 전통과 중세의 기독교로 연구의 방향을 돌린 것은 근대 통치성의 출현 배경에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권력이 사용했던 특별한 내용의 전략과 전술이 있었고, 이와 같은 종교적 권력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 근대의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 때문인 것이다.

사목권력과 관련된 1978년 강의에서 푸코는 사목의 의미를 초지일관 목자(shepherd)와 양떼(flock)의 관계의 비유에서 찾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비유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 사회를 성립시키고 발전시켰던 통치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것의 외피적 특징, 즉 영토보호, 인민통합, 사회질서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하나의 개인으로서 또는 집합적 전체로서 보살피고 지도하는 것이 권력의 가장 중요한 작동방식이라는 푸코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푸코는 사목권력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기독교의 성립 전후로 나누어 보고 있는 바 본 연구도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

1. 기독교 성립 전의 사목권력

1) 사목권력의 특징

어원적으로 본다면 사목(pastorate)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사목으로 보는 것은 고대 그리스가 아닌 중동지방, 즉 아시리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히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푸코는 말한다. 푸코에 따르면 이들 중동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생성되기 전부터 인간에 대한 신의 관계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관계로 보았다. 이 지역 안에서의 차이점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왕을 신의 대변인으로 보아 왕과 인민의 관계 역시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보았지만 유독 히브리에서만은 다비드 왕을 제외하고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사목관계로 보았다는 점이다(Foucault, 2007: 124).

푸코는 고대 히브리에서 발견되는 사목관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사목권력은 일정한 영토를 기반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 그것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군집으로서의 사람들에 대하여 행사되는 권력이다⁵⁾. 그리스 시대의 신들이 자신만의 장소, 도시, 신전을 가지고 있는 영토적 신이라면 히브리의 신은 이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들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신이다. 도시의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신들이 나타난다면 히브리의 신은 사람들이 도시의 성벽 밖으로 쫓겨나서 방황할 때 등장하여 이들을 인도하는 신이다. 양떼와 같이 이동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히브리의 신을 말하면서 푸코(2007: 125)는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라는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인용하고 있다.

사목권력의 두 번째의 특징은 그것이 자비로운 권력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권력은 영토에 대한 정복, 재산의 약탈과 쟁취, 상장을 통한 권위의 양양 등을 특징으로 했다고 푸코는 말하면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적 권력과 달리 사목권력은

5) 이점에 대하여 푸코(2007: 125)는 “히브리 신의 현존은 그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강렬하고(intense), 가시적(visible)이다”라고 말한다.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존재근거로 삼는 권력임을 강조한다. “사목권력은 보살핌의 권력이다”(Foucault, 2007: 126). 사목권력의 정점에 있는 목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양떼가 충분히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를 찾아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일이다. 목자가 가지는 권력은 양 하나하나와 전부를 보살피면서 그들이 배고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길을 잃고 혼매지나 않는지 계속 관찰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사목권력이 되는 것이다.⁶⁾ 따라서 목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양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자비로이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며 또 한 그 의무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과거에 사람들을 신이나 군주 앞에서 떨게 만들었던 테러나 물리적 폭력으로서의 권력은 사목권력과 대척점에 있는 권력인 것으로, 권력이 사목권력으로 인식되는 순간 권력은 오로지 양떼로서의 피지 배자의 안전과 행복, 즉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자비로운 권력으로 변하는 것이다.

사목권력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이 “개인화(individualizing)”를 지향하는 권력이라는 점이다(Foucault, 2007: 128). 비록 권력의 대상이 인간집단 전체로 보일지라도 사목권력은 개인 하나하나에 대하여 행사되는 권리이다. “목자는 아침에 양떼를 초지로 인도할 때 양의 숫자를 세고 저녁에도 모두 무사히 돌아왔는지 숫자를 세면서 양 각자를 개인적으로 돌본다”(Foucault, 2007: 128). 즉, 목자는 자신의 권력을 양떼 전체를 위해 행사하면서 동시에 양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역설(paradox)이 존재한다고 푸코는 말하는데, 그 내용은 진정한 사목권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즉 전체와 각자를 동시에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Omnis et singulatim*⁷⁾. 바로 이 역설은 현대의 행정권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푸코는 보고 있는데, 진정한 목자는 한 마리 길 잊은 양을 찾아 전체를 희생 시킬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목자는 양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양 한 마리 또는 목자 자신을 희생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와 각자에 대한 역설은 그 후 기독교 사목권력의 문제들을 구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푸코(2007: 127)는 고대 이집트의 신(Ra)의 예를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며, 당신의 양떼에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신 Ra여 ...”라는 이집트 문헌을 예로 들고 있다.

7) 라틴어로 각자와 모두를 말하는 이 어구는 푸코(1988)가 197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연설을 출판할 때 제목으로 사용한 어구이다. 이 어구가 표현하는 내용은 양떼 모두를 구하되 각각의 양도 하나의 독자적 존재로서 구해야 된다는 역설적 상황을 말하고 있다. 즉 사목권력에서는 전체에 대한 구원과 각각의 개인에 대한 구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한다.

2)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의 계보학적 기원: shepherd와 weaver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가 행정학적 의미를 지니는 순간은 인간 공동체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은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사목권력이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통합을 보장하는 정치적 권력이라는 플라톤의 주장을 분석할 때이다. 즉, 푸코는 현재의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 사이의 분화의 계보학적 기원을 균동지역에서 발전한 사목권력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발전한 정치적 권리 사이의 긴장과 대립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목과 정치의 차이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정치가(Statesman)』 편을 분석하는 푸코의 강의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생긴다.

플라톤이 보는 정치 또는 정치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정치적 공동체를 조화롭게 통합시켜야 한다는 당위이다. 플라톤도 개인 하나하나와 전체를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떼에 대하여 목자가 하는 일은 폴리스 공동체에서는 의사, 농부, 교사, 체육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 또한, 플라톤에 따르면, 폴리스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목권력이 하는 일은 정치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중요도가 한참 떨어지는 일로서 그것들을 정치적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방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푸코(2007: 146)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당신은 정치인이 자신을 낮추고, 시간을 내어서 목자, 또는 의사, 교사, 체육가처럼 시민들의 옆에 앉아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푸코(2007: 123)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지배자들에게 “통치의 목적 혹은 표적은 실체적 현실로서, 통합으로서, 그리고 생존과 소멸 가능성으로서의 도시국가”인 것이다. 통치의 목적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쉽게 분열되는 개인들을 도시국가의 이상에 맞게끔 통합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플라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와 정치인들의 임무는 사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옷감을 짜듯이(weave)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와 행동을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것으로 본다. “정치인은 직공(weaver)인 것이다”(Foucault, 2007: 145). 올바른 정치인의 임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현세에서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개인적으로 통치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이데아에 근접하게끔 폴리스를 이끌고 가는 곳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는 현대

에 와서 행정의 주 업무가 되어버린 목자가 하는 일, 즉 시민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일들을 플라톤이 “정치의 보조적 기술(auxiliary arts of politics)”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성을 낮추어 보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푸코(2007: 147)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정치적 용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또한 플라톤의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성찰은 사목 주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2. 기독교와 사목권력

오랜 전에 근동지역에서 출현한 사목권력이 국민 개개인과 전체에 대한 통치를 의미하는 근대적 의미의 통치권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목권력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나면서 교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아야 한다고 푸코는 주장한다⁸⁾. 기독교 아래에서 사목권력은 개인들의 구체적 삶 전체를 포괄하는 권력이 되었으며, 사목권력의 행사를 위한 법규, 규정, 기술, 그리고 절차 등이 제도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가장 위대한 목자”로 규정되었고, “모든 교회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도원장에서 주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사목조직으로 규정하였다”(Foucault, 2007:153).

기독교에서 사목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조종하는 기술, 사람들을 관찰하고 순차적으로 독려하는 기술,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들의 존재 매 순간마다 집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쳐주는 기능을 갖는 기술을 탄생시켰다(Foucault, 2007: 165).

이와 같이 사람들을 개인과 전체로 그리고 내면적 양심과 외면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독교적 사목권력은, 푸코에 따르면, 16세기 이후로 서양세계에서 등장하는 개인화와 전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명권력의 계보학적 전조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이다. 따라서 푸코가 말하는 생명권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목권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8) 근대에 등장하는 생명권력에 대한 계보학적인 조상으로서의 사목권력이 기독교에서 시작되었음을 푸코(2007: 147-48)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서양세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유형의 권력의 원천으로서, 사람들에 대한 통치를 위한 절차들의 모형, 모델로서의 사목의 진정한 역사는 오직 기독교와 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독교적 사목권력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푸코가 보기에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권력과 히브리의 사목권력과도 구분되는 기독교적 사목권력의 독자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구원, 법률, 진리 간의 밀접한 관계에 기초한 권력이라는 점이다. 먼저 사목권력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권력의 가장 근본적 목적이 개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사목권력이 법과 연结되는 이유는 개인과 공동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의 질서, 명령 그리고 의지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목권력이 특정한 종류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인들이 구원을 얻고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속죄나 고해성사 등의 의식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드러내 보일 때에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푸코(2007: 169-72)는 구원, 법, 진리 사이의 관계만을 보아서는 기독교적 사목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목자와 양떼 사이의 관계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역설적 상황을 전제로 한 긴밀한 유대 관계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푸코는 네 가지 원칙을 밀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석적 책임(analytical responsibility)”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으로, 목자는 “그의 양 각각의 모든 행위, 목자와 각각의 양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그리고 양들이 행하는 모든 선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포괄적이며 즉각적인 전이(exhaustive and instantaneous transfer)”이라는 것으로 이 원칙에 따르면 목자는 양 각자가 행하는 선한 일 또는 악한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겨야 한다. “목자는 양이 잘한 일에 대하여 특별하고 개인적인 환희를 가지고 기뻐해야 하며 양이 나쁜 일을 하면 비통해하고 후회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희생적 반전(sacrificial reversal)”을 말하는데, 이는 목자는 그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양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체적 일치(alternate correspondence)”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목자의 실패에 반비례하여 양의 구원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목자가 말을 잘 안 듣는 양

9) 여기서 말하는 긴밀한 유대관계란 전술 했듯이 목자는 양떼 모두와 동시에 양 하나하나를 구원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스캔들의 원인이거나 자신의 부정으로 전체 양떼를 부폐시킬 위험을 가진 양은 포기되거나, 배제되거나, 쫓아내거나 해야 한다. 반면에 역설이 발생하는데 한 마리의 양의 구원은 목자로부터 전체 양떼를 돌보는 보살핌을 요구한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는 자신의 모든 책임과 임무를 포기하고, 전체 양떼를 버리고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Foucault, 2007: 169).

들과 씨름을 하면 할수록 그 목자는 하느님의 눈에 들어 구원에 근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목자와 그의 양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목자의 임무는 그의 양 하나하나와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내면적 진실과 외면적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그들을 권력에 순종하는 “탈주체화”된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2007: 181)는 “목자는 자신이 감독하는 양떼의 행동과 행위에 대한 영원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하루의 일상을 관찰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목자로서의 성직자는 일반 신도들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에서부터 그들의 정신적, 양심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기독교에 의해서 완성을 보는 사목권력은 푸코에 따르면 양떼로서의 개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과 신체에 대하여 세밀하고 사려 깊은 관찰과 감독을 행사하는 목자와 그들에 대하여 “포괄적, 전체적, 영원한 개인적 복종관계”를 고수하는 일반 신도 사이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목은 구원, 복종, 진실이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III. 사목권력과 행정권력

1. 사목권력과 근대의 국가 권력

근대적 통치의 출현과 기독교적 사목이 계보학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푸코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푸코(2007: 165)는 사목권력은 “근대적 국가로 가는 문턱의 특징을 갖는 ... 통치성의 배아적 지점(emбриonic point)”에 해당한다고 밀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풀어쓰면, 국민 하나하나와 전체로서의 인구의 생물학적 삶 자체를 책임지는 생명권력을 탄생시킨 근대적 국가는 중세이전부터 사용된 사목적 권리 기술들이 통치의 기술로 “포획”, “수정”, “적용”되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푸코는 보고 있는 것이다.

푸코(2007: 229)는 근대가 시작되는 16세기에 교회의 권위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정신적 형태로의 종교적 사목의 강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종교의 영역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행위에 행위를 가하여 어떻게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푸코는 상기시키고 있다¹⁰⁾. 그렇게 되면서 군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과거와 같이 자신의 주권을 가시적, 위압적으로 보이면서 사람들 을 복종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푸코는 근대적 통치가 출현하는 역사적 조건으로 보고 있다.¹¹⁾ 즉, 푸코는 16세기에 기독교적 사목이 세속적 권력에 놀려서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면서 교회나 수도원에서 발전한 사목의 기술들이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주권자에 의한 정치, 행정적 통치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배하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였던 군주는 지금 자신이 영혼들을 지휘 (conduct)하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책임을 져야하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종교적 사목에서 다른 형태의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지휘나 지도로의 이전은 없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에는 이 문제와 행위의 기술에 대한 강화, 증가, 일반적 확산이 있었다. 16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지휘, 지도, 즉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 것이다(Foucault, 2007: 231).

따라서 푸코는 16세기에 들어오면서 군주의 주권과 경쟁하면서 등장하였던 통치 가 자신의 합리성, 즉 통치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양 사회를 관통하는 새로운 권력 형태의 단초가 출현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그때까지의 지배적 권리 형태인 주권 과는 다른 목적, 작동형식, 수단과 기술을 갖춘 전적으로 새로운 권리이다. “17, 18세 기에 오면서 우리는 신체 그것도 인간 신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둔 권리 기술의 등장 을 볼 수 있다”(Foucault, 2003b: 241-2).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가시적,

10) “예를 들어 16세기 스토아 철학의 부활로 대변되는 개인행동의 문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치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목원칙의 전체적 주제인 개인들의 영혼과 삶에 대한 통치문제가 있다. 16세기에 등장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통 치와 교육의 문제가 있다. 또한 아마도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문제 중 마지막인 군주에 의한 국가의 통치가 있다”(Foucault, 2007: 88).

11) 우리는 여기서 군주의 주권적 권리와 사목권력 간의 차이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들이 사목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개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목자의 이익을 위해 서가 아니다. 즉 개인들은 자신을 위한 스스로의 돌봄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목자에 의한 인도를 허용한다. 두 번째, 사목권력은 주권처럼 명령만을 내리는 권리이 아니라 양떼의 구 원과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왕권의 수호를 위해 인민들을 희생 시킬 수 있는 것이 주권의 특징이라면 사목권력은 스스로 희생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주권이 법을 통해 말을 한다면 사목권력을 보살핌(care)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주권의 목적이 플라톤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도시(영토)의 유지와 번성, 시민들의 통 합에 있다면 사목권력은 오로지 양떼 하나하나와 전체에 대한 구원이다(McGushin, 2007: 201).

폭력적 힘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인간들의 개별성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주권적 권력 모델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권력 기술은 개인 각자의 개별성을 통해서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의미가 들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권력을 푸코(1979: 139)는 “규율권력” 또는 “인간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정치(anatomo-politics of the human body)”라고 말한다.

그리고 18세기 후반부가 되면서 주권과는 대비되고 규율권력과는 병행하거나 또는 이를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은 “규율적이지 않고 ... 신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사람 ... 종(species)으로서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력이다(Foucault, 2003b: 242). 이 권력은 통계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에 기초하여 인간에 대한 직접적 규율화가 아니라 인구에 대한 규제, 통제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푸코는 이 권력을 “인구에 대한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라고 말한다. 생명권력은 좁게는 후자만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 신체에 대한 규율화와 인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두 측면으로 하는 하나의 권리으로 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1979: 139). 그래서 푸코(1979: 140)는 생명권력의 시대는 “인간 신체의 복종과 인구에 대한 통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술들의 폭발”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푸코의 권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 서양에서 출현하는 생명권력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살고, 죽고, 병들고, 건강하고, 번식하는 생물학적 의미를 지닌 인간의 삶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장악되고(seized), 통치되며(governed) 시작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관리하는 생명권력의 계보학적 뿌리는 사목권력이라는 푸코의 주장이다. 푸코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현대의 생명권력과 사목과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 진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문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내세에서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건강, (충분한 부와 생활수준으로서의) 복지, 안전, 사고로 부터의 보호. 일련의 세속적 목표들이 전통적 사목의 종교적 목표들을 대체하였다”(1982: 215). 이 점에 있어서는 현대 생명권력 연구의 또 다른 권위자인 Roberto Esposito 역시 사목권력은 “생명권력의 첫 번째 계보학적 여명기(incunabulum)”라고 말하고 있다 (Mayes, 2010: 111).

여기서는 사목이 현대의 생명권력적 행정의 계보학적 조상이라는 주장의 진위를

따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뒤에 Ojakangas의 주장을 다룰 때 다시 언급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권력의 조상이라는 사목권력이 던지는 현재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행정권력의 내용, 발전경로, 그리고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사목권력과 진실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의문은 통치와 생명권력의 계보학적 기원으로 사목, 사목권력을 밀하는 푸코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다면 그와 같은 주장이 현대의 행정권력에 대한 연구에 주는 이론적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있다. 이 두 문제들에 대하여는 푸코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푸코의 주장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다음 장으로 미루고, 사목권력을 현대의 통치권력 즉 행정권력의 전조, 배경이라고 말하는 푸코의 주장의 이론적 의미와 실천적 함의를 주제, 주체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자는 푸코가 현대 행정권력의 계보학적 연결고리로 사목권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목권력이 한편으로는 목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양떼를 구성하는 신자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목권력은 개인화(individualizing) 시키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주권자, 군주는 개인에게 관심을 둘 경우 그 개인을 추상적 법률적 주체로서만 보았으며, 따라서 그 개인의 생각, 감정, 삶의 방식 등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들이 주권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주권자 자신의 이해가 자신의 권리이나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에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왕명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목권력은 목자의 감독 아래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에 대하여 매 순간 영원히 관심을 가지는 권력이다. 그래서 푸코(1982: 214)가 말하기를, “(사목권력은) 사람들의 내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비밀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행사될 수 없는” 권력이다. 사목권력은 단지 개인적 영혼의 구원만을 지향하는 권력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에 대한 은밀하고도 자세한 지식의 축적이 전제되어야만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인 것이다. 개인들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사목권력은 강력한 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 이 가운데 푸코(2003a: 171-76)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해성사(confession)이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위 등을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그것을 듣는 성직자는 그것을 해석할 권리와 그 개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목적 돌봄, 또는 사목적 통치는 한 개인의 삶의 전 과정을 목자 자신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다.

사목권력의 지배를 받는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 삶의 전 영역에서 권력의 객체(object)가 된다. 그리고 목자의 권위, 개인적 영혼에 대한 통치, 개인으로부터 얻은 지식의 사용 등은 내세에서의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주권자가 법을 전면에 내세워서 모든 개인들을 추상적이며 동등한 법률적 주체로 간주하면서 지배를 이어나간다면 목자는 구체적 개인들의 생활, 생각, 욕망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현세에서의 올바른 삶과 내세에서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한다.

사목권력 아래에 놓인 개인들은 자신의 삶, 생각, 신체의 모든 영역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 안에 어떠한 비밀도 지녀서는 안 되며, 항상 경계하는 감시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말하여진 사실을 자신의 진실(truth)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자신의 진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푸코는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속죄와 정화의식을 비교적 자세히 말하고 있다(Dreyfus & Rabinow, 1982: 173-78).

사목권력의 등장 이후로 개인에 대한 진실은, 푸코의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82년 강의의 제목 “주체에 대한 해석학(*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이 말하듯이, 오직 그 개인의 복잡한 내면을 해석해야지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현재에도 개인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에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푸코가 문제시 하는 것은 진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개인의 내면적 실체를 해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에 간혹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진정한 ‘나’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고 그것을 찾는 일이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푸코에 따르면, 그 사람이 믿는 내면의 실체는 단지 지식과 권력의 부산물일 뿐이다. 푸코(1997a: 290)가 강조해서 말하듯이 개인의 주체는 사람들이 다양한 자아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가꾸고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형식(form)이지 결코 어떤 본질(substance)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푸코(1979: 59)는 고해성사를 도구로 하는 권력의 논리가 현재의 우리까지도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인간들은 “고백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3. 사목권력과 탈주체화

위에서 우리는 푸코가 사목권력과 거기서 발전되어 나온 현대의 행정권력, 생명권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목권력이 의심을 받는 것은 그것이 개인화를 지향하는, 즉 각각의 개인의 내면에 대한 (권위적) 해석을 기초로 개인의 정체성을 재단하려하기 때문인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인간 개개인을 규율의 객체, 연구의 객체, 권력의 객체로 보는 사목권력의 진정한 문제점은 그것이 개인들이 자신의 영혼이나 신체를 종교적 권리나 후에는 과학적 담론이 제시하는 진리 기준에 맞추지 않고 창의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을 애초부터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푸코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푸코가 보는 기독교는 교리나 실천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복종, 그것도 목적 그 자체로서의 전제적, 절대적, 무조건적 복종과 의존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하면 자신의 개별적 의지, 정체성, 주체성에 대한 절대적 포기, 즉 자기희생에 다름이 아니다. 기독교적 금욕이나 고백은 고해신부에게 말할 수 있는 양심과 자기 인식의 영역으로서의 자신의 내면을 갖는 개인들이 만들어지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이와 같은 “해석적-고백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보다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바로 개인에게서 자율성, 의지, 자아 정체성을 박탈하는 의미로서의 탈주체화인 것이다.

기독교의 복종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 사람들은 복종할 수 있기 위해서 복종한다 ...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복종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에 대한 명백한 포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복종의 상태일 것이다 ...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이 비난받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 반대로 이 즐거움 안에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기적인 활동들이 있기 때문이다 ... 기독교적 금욕주의의 근본적 원칙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삶, 빛, 진리,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Foucault, 2005: 250).

푸코가 왜 개인들을 탈-주체화시키는 권력으로 사목권력을 말하는지, 또 사목권력을 배경으로 발전한 현대의 행정권력과 관련하여 탈-주체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위해서는 푸코의 연구의 초점이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고대 그리스와 제정 로마에서의 개인 윤리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로 바뀌는 이유를 알아야한다. 푸코가 죽기 얼마 전에 출판된 『성의 역사』 2권과 3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아에 대한 고대 그

리스와 제정로마에서의 윤리와 기독교의 그것이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을 푸코가 밝혀야 할 학자적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본 논문에서 자세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가 이해하는 한도에서 푸코가 주장하는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시대의 자아에 대한 도덕적 인식과 기독교에서의 그것의 차이를 현대의 행정권력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푸코(1985: 23)는 고대 그리스나 제정로마에서도 성의 윤리를 포함한 개인행동 윤리는 기독교 신자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도덕적 준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준칙의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통념과는 달리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시민들은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명확한 형태로 아테네나 로마에 존재했다고 푸코는 말한다. 그러나 푸코는 한 가지 면에서 고대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와 기독교 시대의 차이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이 개인의 자아와 관계 맷는 방식이 양 시대가 극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푸코가 보는 기독교에서의 자아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욕망에 대한 끊임없는 해석을 통해 포기해야 하는 실체이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고백이나 속죄를 통해 자신의 진실을 듣게 된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1997b: 263)가 이에 대비시켜서 고찰하는 고대 그리스-헬레니즘시대의 윤리는, 그의 <윤리의 계보학>이라고 제목 붙여진 그가 죽기 1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듯이, “자신의 행동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맷어야 하는 관계, *rapport à soi*”인 것이다. 즉, 윤리는 개인이 자신의 자유에 “의도적인 형태(deliberate form)”를 부여하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지 규범의 준수를 위해 자신의 자아를 희생시켜서 얻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자아는 탈-주체화가 아닌 진정한 주체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푸코는 자기희생, 복종의무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윤리가 규범이나 법에 대한 복종적 행동을 윤리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서양의 근대적 윤리관념의 직접적 조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윤리는 “윤리적 주체(ethical subject)”로서의 자아형성에 있어서 개인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대의 지배적 윤리관과도 다른 독자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대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의 윤리적 자아형성에 대하여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윤리적 자아의 형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실천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일

부분을 제한하고, 자신이 따라야 할 준칙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고, 자신 의 도덕적 목표의 역할을 하는 자신의 존재형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개인이 자신에게 행동하고 자신을 감독하고, 시험하고,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Foucault, 1985: 28).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의 윤리관을 자신의 윤리이론의 근간으로 삼는 푸코에게 사 목권력이 요구하는 자기희생과 절대적 순종은 그것이 윤리적 주체의 망각을 결과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¹²⁾. 푸코는 모든 도덕적 행동은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아의 형성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윤리적 주체는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느 정도의 고행(askesis)과 푸코가 “자기실천(practices of the self)”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푸코가 단순히 금지의 법률이나 규범을 준수하면서 도덕적 사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윤리적 주체의 형성과 이를 위한 개인적 노력들이 없이는 개인들은 영원히 권력 작용의 수동적 객체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코가 말하는 윤리는 개인적 변혁과정이고 미학적인 것이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기능하는 규범, 가치, 법규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계 보학적 연원을 지닌 것들로 인식할 필요를 말하고 있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의 코드화된 규범들이 지니는 역사적 우연성을 인식해야만 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초월하고, 한계를 시험하며, 가능성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IV.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쟁점들

1. 근대의 생명권력의 뿌리는 그리스-로마에 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가?

12) 윤리적 주체의 망각을 초래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푸코는 데카르트 이후 분명해진 진리에 대한 잘못된 사유에 있다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에는 진리는 단순하게 “너 자신을 알라(Know yourself)”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배려(care of the self: epimēleia heautou)”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에 의해서 보편화되었던 개인의 내면에 대한 고백을 통한 진리의 접근은 데카르트에 오면서 모든 지식(진리)은 개인이 자신의 다른 활동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지적인 이성을 사용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과 철학적 삶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두 영역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Foucault, 2005: 26-30).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에 출현하는 정치적 주권과 대비되는 생명 관리적 행정 권력은 개인화와 전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권력이다. 권력의 개인화에 따라서 행정 권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체 영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체화에 따라서 인구를 그것이 가지는 특성들, 즉 사망률, 출생률, 빈곤률 등을 관리 대상으로 삼아 통치해 나간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생명권력이 히브리-기독교적 사목권력을 계보학적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푸코의 주장도, 현대의 생명권력이 빈민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을 돌보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생명권력은 개인이건 전제로서의 인구이건 사람(들)을 항상 “살게 만드는 (to make live)”는 권리가 아니라는 문제 있다. 푸코(2003b: 259-60)도 그의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76년 후반부의 강의에서 생명권력을 가장 부정적으로 사용한 집단을 독일의 나치와 소련의 스탈린 정권이라고 말하면서, 생명권력이 주권과 결합하면 한 집단이 자신의 생물학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대량학살 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의문은 “삶과 죽음(life and death)”을 동시에 생각하는 권력으로서의 생명권력을 용서와 사랑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독교 사목권력의 후계로 보는 그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Mika Ojakangas(2012)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생명권력의 진정한 계보학적 뿌리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라고 하면서 푸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고대 스파르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우생학의 관점에서 선별했던 예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 주도의 우생학을 강조한 문헌적 증거들,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혼자에게 특혜를 주고 아이가 있는 가족에 상을 주었다는 사례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Ojakangas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통치가 결코 영토의 통합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6세기 이후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통치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계기도 중세의 사목권력의 세속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전통과 사상의 부활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푸코가 사목권력에 뿌리를 둔 생명권력이 국가기관의 권력으로 제도화 되는 증거로 본 17세기 유럽에서 “국가이성 (reason of state)”과 관방학이 등장하는 것도 사목권력이 아닌 그리스-로마 시대의 국가철학에 계보학적 뿌리가 있다고 Ojakangas는 말한다. 그러면서 Ojakangas (2012: 11)는 최고의 관방학자였던 von Justi가 그의 대표적 저서 《경찰학의 원칙 (Grundsätze der Polizeywissenschaft)》의 첫 번째 문장에서 “경찰(Polizei)의 이름은 그리스의 polis, 도시에서 나왔으며, 도시와 시민적 제도의 좋은 질서를 의미한

다”라고 말하면서 관방학의 인식론적 기반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사상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¹³⁾ 결국 Ojakangas(2012: 2)는 “사목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생각과 실천은 푸코가 생명권력, 통치성이라고 말하는 것의 서곡이 아니다 … (오히려) 그 것은 그리스-로마에서 기원하여 고전적 유산의 부활 덕분에 초기 근대 유럽에까지 계속된 통치의 이념과 실천의 역사와의 단절(rupture)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목적과 기술면에 있어서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대 유럽의 통치권력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독교 사목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Ojakangas의 주장에도 약점이 존재한다. 우선 푸코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Ojakangas가 주장하는 생명권력적, 우생학적 정치이론이나 국가 정책이 존재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시대에 대한 푸코의 해박한 지식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푸코가 사목권력으로부터 생명권력으로의 계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사목권력이 개개인의 건강과 생존을 목적으로 한 권리이라서가 아니라 그 권리의 작동방식, 즉 개인의 내면적 진실에 대한 지식의 획득과 그 것의 권위적 활용을 통해 권리가 기능한다는 면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목적과 수단만을 보고 그것의 구체적 작동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Ojakangas의 주장은 일면적인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2. 사목권력은 사랑의 권력인가 폭력을 포함한 권력인가?

여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의문은, 그것이 근대의 생명권력과 계보학적 계통을 같이 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목권력의 성격 자체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생명권력을 중핵으로 하고 있는 행정권력에는 국민 개개인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생학의 관점에서 국민을 구분하거나, 정상적 국민으로 간주될 수 없는 사회적 타자를 양산하거나, 또는 지속적 감시를 통해 국민을 규율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목권력이 생명권력의 모태를 이루는 것이라면 푸코는 현재 생명권력이 보이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 역시 사목권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권력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부정적 측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된다.

13) 여기서 말하는 경찰을 지금의 경찰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Polizei는 외치 대비되는 내치의 개념으로서 국민의 생활 전반을 국가 통치의 영역 안으로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어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크게 두 가지 관점이 관찰된다. 첫째는 사목권력은 양떼의 (현세에서의) 구원을 위한 권력으로 이를 위해 목자 자신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푸코가 강조한다고 하면서 그가 사목권력을 사랑과 보살핌의 권력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푸코가 니체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 즉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의 무리도덕(herd morality)에 있는 원한(resentment)에 기생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같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목권력 역시 본질적으로 억압적 권력이라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Ojakangas이다. 위에서 필자는 Ojakangas가 2012년의 논문에서 근대에 등장하는 생명권력의 뿌리를 고대 그리스-로마의 통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Ojakangas는 2005년의 논문에서는 사목권력과 생명권력이 계보학적으로는 한 줄기라는 전제하에 사목권력은 오직 생명을 “살게 만드는(to make live)” 권력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조르지오 아감벤(1998)의 주장, 즉 생명권력은 그 기원이 근대가 아니라 고대 로마이며 시작부터 생명권력은 “헐벗은 삶(bare life)”을 양산하면서 주권과 하나가 되어서 발전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근대에 등장하는 생명권력은 사목적 보살핌에 뿌리를 둔 권력으로 절대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는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Ojakangas(2005: 20)에 따르면, 사목권력의 역할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와 모두의 삶으로서의 생명을 ‘보장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목권력)의 수단은 법이나 폭력이 아니고 ‘개인적 삶에 대한 보살핌’으로서의 보살핌이다. 생명권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폭력의 정반대인 기독교적 사랑(agape)의 힘으로서의 바로 그 보살핌이다.” 그러면서 Ojakangas는 독일의 나치정권이 보인 생명정치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본다. 푸코(2003b: 246)가 말하는 생명권력은 자체로는 죽음을 “금기시 되는 것(object of taboo)”으로 보고 있는 권력으로 그것이 국가적 주권에 의해서 인종주의(racism)와 결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폭력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푸코가 보는 사목권력 자체는 비폭력적이면서 생명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Christopher Mayes(2010)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연구 안에는 그 권력이 가지는 모호성, 즉 “삶을 촉진시키나 또는 죽음에 이르기 까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to foster life or disallow it to the point of death)” 양면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고대 히브리의 사목에서 기독교적 사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성서에 기초해서 다시 분석한다. 분석 결과 Mayes는 히브리-기독교적 사목에는 폭력적인 요소들이 푸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현재의 생명권력이 지니는 생명 촉진적 성격과 생명 부정적 성격

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목권력이 지니는 양면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적 사목의 자비로운 권력은 (고대 히브리의) 다비드 시대 사목의 폭력성과 분리되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몇 쓰인 것으로, 사목권력 안에 폭력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생명권력은 숨겨진 토대로 사랑 또는 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 대한 보살핌은 사랑과 폭력의 융합에 기초하는 것이다. 생명권력의 숨겨진 토대는 목자의 역할에서 사랑과 폭력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긴장인 것이다(Mayes, 2010: 122).

사목권력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살핌의 권력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폭력과 특정 집단의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양면성을 지닌 권력이라는 점은 Matthew Chrulew(2014; 2013; 2010)의 일련의 논문들에서도 보이고 있다. Chrulew는 푸코가 기본적으로 니체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니체는 그의 『도덕의 계보』에서 기독교적 사랑은 약한 영혼들에게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면서 유순함, 겸손함 등을 미덕으로 하는 무리도덕을 조장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말해서 “복수와 증오의 나무줄기”로부터 나온 허약함과 분노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Chrulew 역시 푸코가 사목의 몇 가지 특징에서, 특히 양떼 하나하나와 전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경우와 신도가 참회의식이나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과정에서 권력의 폭력성이 들어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말한다. 참회의 과정과 관련하여 Chrulew(2013: 22-3)는 “우리가 권력관계를 다른 사람의 행위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적 사랑의 제도화된 형태는 ... 용서할 수 있는 신의 권리를 지닌 목자에 대한 참회자의 복종을 강화하고, 목자의 감시를 촉진시킨다 ... 사랑은 여기서 권력관계를 강화시키는 질식시키는 힘(suffocating force)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목권력의 확장이 새로운 형태의 감시와 인간 행동의 지나친 규율화를 초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Chrulew에 따르면, 푸코에 의한 기독교의 계보학은 또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실천들을 상쇄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목권력은 분명히 양면적인 권력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그것이 생명권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는 현재 주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기독교가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종교라면 그것은 또한 그 관계의 중심에 복종, 감시, 희생, 그리고 지식을 끌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을 사랑과 폭력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권력비판의 관점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 (Chrulew, 2013: 23).

3. 근대적 행정의 신학적 계보는 사목에 있는가 아니면 오이코노미아에 있는가?

권력비판에 대한 푸코의 정신을 이어 받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더욱 치밀하게 발전시킨 학자는 조르지오 아감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행정권력의 출현이 기독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푸코의 주장에 대하여 아감베도 동의한다. 그러나 아감베은 기독교가 현대 행정의 출현에 기여한 것은 사목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¹⁴⁾ 기독교 성립 초기에 있었던 교리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삼위일체론(Trinitarian Doctrine)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한된 지면에 복잡한 아감베의 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어느 정도 독자들의 인내를 요구하면서 아감베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감베은 후에는 정치적 주권과 구분되면서 행정권력으로 발전하는 근대 서양의 통치권력의 계보학적 계통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oikonomia, 그것을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삼위일체론, 그리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스콜라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영혼에 대한 “섭리적 통치(providential government)”에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감베의 주장이 행정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위와 같이 신적 통치(divine government)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행정적 통치의 가능성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더불어 주권(정치)이 아닌 행정(관리)이 서양 2500년 정치사의 중심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아감베은 서양 정치사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군림(reign)과 통치(government)의 불가분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 군림은 영광을 상징하고 통치는 실질적 권력 작용을 의미한다. 아감베은 루카복음서 22장 38절에서 예수의 제자가 칼이 두 자루 있다고 하니까 예수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2011: 100-2). 그리고 이때 칼 한 자루는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항상 칼집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칼 하나는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칼이다. 아감베이 이 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성립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는 오직 두 자루의 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그 가운데 한 자루는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체 칼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본 점이다(이문수, 2013: 155).¹⁵⁾

14) 사목권력이 행정권력의 뿌리가 되는 신의 통치와 관계가 없음을 아감베(2011: 132)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한다: “어떤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목자의 손에 양떼가 인도되는 것과 같이 ... 외부로부터 개입하여 피조물들을 지도하는 어떤 힘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다.”

분명 아감벤의 주장은 사목권력이 현대의 행정권력의 원천이라는 푸코의 주장보다 진일보한 주장이다. 교부들은 하느님과 예수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두 개의 신을 만들지 않고도 두 분의 분리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들이 발견한 해결책은 지상에서 구원의 행정을 담당하는 예수의 무근원적(anarchical)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Agamben, 2011: 58). 여기서 아감벤의 연구문제인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주권자가 왜 필요한지 또 그가 앉는 자리는 왜 항상 “비어있는 자리(empty throne)”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잠정적 답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푸코의 관심은 아감벤처럼 존재적 의미를 파고드는 형이상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석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의 주장의 요체는 권력의 존재론(ontology) 자체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상적 형태(ontic)가 무엇이고 그것이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로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속죄의식, 고해성사 등의 의식에서 보이는 개인의 내면적 지식에 대한 권위적 해석을 통한 지배 그리고 이에 대한 신비주의나 극단적 금욕주의와 같은 반대행동(counter-conduct)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대에 등장하는 생명권력을 권력분석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 비록 권력의 내부에 있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감벤이 던지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푸코가 던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목권력과 생명권력에 대한 그의 주장의 가치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V. 비판적 평가와 행정학적 함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삶을 생물적 삶 자체를 의미하는 조에(zoe)와 형식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바이오(bio)로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 공동체인 풀

15)이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쉽게 말하면, 신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도 알아야 하는가는 의문으로 남는다. 아감벤(2011: 120)은 제롬(Jerome)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말한다: “신의 위대함을 그가 모든 순간에 몇 마리의 모기가 태어나고 죽는지를 아는 데까지 확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우리는 이와 같은 사소한 것에까지 섭리를 확대하여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하는 수준까지 신에 대한 아부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신은 지상에서의 일에 대하여 상당부분 무능한 존재로 남아있어야 된다(Siisiäinen, 2014).

리스를 정의할 때 조에를 오이코스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서 이를 폴리스 영역에서 배제시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물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정치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인간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푸코(1988: 71)는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197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의 태너 강연에서 서양의 권력의 계보를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서양의 정치사는 지금까지 전자의 관점에서 써졌다고 말한다. 푸코가 주권적 권력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이 관점은 권리의 객체인 사람들을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을 형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서게 되면 주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우리는 사람들을 공동체적 삶(bio)과의 관련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로 보게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는 전체-국가, 민족, 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시민 게임”은 현재 행정학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공익과 사익, 국가와 사회라는 이분법을 가능하게 하는 선형적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논의가 행정학적 의의를 지니는 것은 “도시-시민 게임”과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주의를 받지 못했던 또 다른 게임, 즉 “목자-양떼 게임”的 존재, 구체적 내용, 그리고 발전과정을 분명히 하면서 현대의 통치성의 계보학적 선조는 후자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검증해보아야 했다는 점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목권력은 일정한 영토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인구)에 대하여, 그것도 개인 하나하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행사되는 권리이다. 또한 정치적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법에 의한 지배를 수단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과는 달리 사목권력은 양떼 하나하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보살핌을 수단으로 권리가 아닌 의무로서 행사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 사목권력은 정치적 권리과 대비되는 “삶에 대한 해석가와 전문가의 권리”, 즉 행정적 권력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다(Ojakangas, 2005: 16). 그래서 행정학자라면 푸코가 현대의 생명권력의 계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16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주권의 일방적 행사가 아닌 통치 자체를 국가의 역할로 새롭게 규정하는 반마키아벨리적 학자들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에 스며들어있는 “목자-양떼 게임”을 간파한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목권력을 계승한 생명권력이 근대로 들어오면서 주권을 대체한 유일한 권리가 되었음을 푸코가 주장한 것은 아니다.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을 언급했던 강연에서 푸코(1988: 71)는 현대 사회는 그 두 가지 게임 간의 “악마적

(demonic)"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푸코가 현대의 정치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권력을 주권적 권력과 생명권력의 단순한 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악마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쉽게도 푸코는 어떤 의미에서 주권과 생명권력의 결합이 악마적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푸코의 생각을 읽는 것은 그를 연구한 연구자의 몫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대로 살게 놔두는 주권과 사람을 살리거나 죽게 그냥 놔두는 생명권력의 결합이 악마적이 되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권리가 되는 경우 일 것이다. 행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실현되는 때는 아마도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폭력에 기초한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최저생활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미미한 경우이다. 푸코(2003b: 239-63)는 1976년의 강의에서 독일의 나치정권에서 주권과 생명권력이 결합하면서 나타났던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말하면서 인종주의가 두 권력이 결합하는 매개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푸코의 주장과는 달리 인종주의를 고려하지 않아도 주권과 생명권력의 결합이 악마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가능성의 하나로 본 연구자는 주권과 생명권력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아감 벤이 즐겨 쓰는 용어인 “비식별의 영역(zone of indistinction)”을 강조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은 시민과 인간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게임이 결합하고, 인간과 시민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근대로 오면서, 아렌트가 말하는 것처럼, “매일 매일의 일들은 거대하고, 전국가적 가정관리 행정에 의해서 보살펴야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1998: 28). 생물적 삶의 정치화와 정치적인 것의 생물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정치적 삶(bio)과 생물적 삶(zoe)의 구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우리의 삶이 비식별의 영역에 놓이면서 보살핌의 대상이었던 우리의 생물적 삶이 정치적 계산과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가면서 “도시-시민 게임”과 “목자-양떼 게임”은 더 이상 푸코의 관심이 되지 못한다. 그의 관심은 개인의 내면적 진실을 드러내 보이는 형태로 발휘되었던 사목권력이 현대의 행정적, 전문가적 권력으로 발전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권력은 종국적으로 그 개인이 윤리적 주체가 되는 길을 원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장애로 인식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행정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푸코의 사목권력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는 현재의 행정권력을 계보학적으로 사유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의 행정권력이 주권과 생명권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사적, 존재적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감벤(1998: 6)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호모 사케르』에서 자신의 주장을 주권적 권력과 생명권력에 대한 푸코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최소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사목권력이 추구하는 목표, 권력의 합리성, 권력 기술, 그리고 목자의 위치와 기능 등의 면에서 그것이 서양에서 근대에 출현하는 통치 성의 전조의 역할을 했다는 푸코의 주장 자체가 현재의 행정학 연구에 주는 함의는 지대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행정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의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목표로 하고, 행정의 객체로서의 개인들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그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면서, 공무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주권적 권력으로 행정권력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목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푸코의 중요한 주장은 현대의 국가권력이 비록 가시적 수준에서는 폭력성을 포기했다고 보일지라도 더욱 침투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권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대의 행정권력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그것의 계보학적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VI. 맷음글

위에서 본 연구는 사목권력의 역사와 특징, 사목권력의 이론적 의의와 쟁점들, 그리고 사목권력의 평가와 행정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푸코가 왜 그토록 사목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나 하는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마무리해 보겠다.

푸코가 보는 현대의 행정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사람들을 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규율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의 행정권력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히려 현대의 생명관리적 행정권력은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자신의 편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정권력이 사람들의 삶에 특정한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사람

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이 진정한 자기인지 가끔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정권력에 의해서 규율화되지 않은 진정한 자신이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생각아래 이를 찾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도록 통치되고 있다. 자신의 내부에서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믿음 자체는 자아가 자아와 맺는 특별한 관계일 뿐이다. 푸코는 이와 같은 자아관계를 “해석적(hermeneutic)” 또는 “고백적(confessional)”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자아관계 속에 있는 개인은 오직 자기해석이나 자기고백을 통해서만 자기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 사목권력에서 탄생한 고백은 푸코에게 현대의 권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고백은 그 영향력을 멀리 넓게 확장하고 있다. 그것은 사법, 의료, 교육, 가족관계, 그리고 애정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가장 평범한 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 죄, 생각과 욕망, 질병과 문제점들을 고백한다
... 서양사람들은 독자적인 고백하는 동물로 변하고 있다(Foucault, 1979: 59).

그러나 해석적, 고백적 주체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해석이나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특정한 객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주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탈-주체화된다는 사실이다. 푸코는 사목권력이 현대의 행정권력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사람들을 개인화시켜 통치하는데 필요한 권력기술, 즉 목자가 양들의 내면적 진실을 고백이나 해석을 통해 알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치의 객체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목권력에 의한 탈-주체화는 고대 그리스와 헬레니즘 시대의 자아에 대한 훈련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새로운 개인으로 ‘전환(conversion)’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개인은 “변화되고, 변형되고, 옮겨지면서 상당한 정도와 상당한 수준까지 과거의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Foucault, 2005: 15). 그러나 문제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전환과 기독교의 그것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바라보는 전환은 자기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이었다. 즉, 자아에 대한 훈련은 자기를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자신의 주체성과 진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과정, 즉 윤리와 지식이 하나님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사목에서의 전환은 자아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는 이때의 전환은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격변

(upheaval)인 것으로 개인이 하나의 존재형태에서 전혀 다른 존재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푸코에게는 기독교에서 참회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계시(self-revelation)는 자기파괴와 다름 아니다(Taylor, 2011: 175).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푸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현대의 행정권력이 개인들을 통치의 객체로서 탈-주체화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을 역사적 필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행정권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은 다른 역사적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이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잊혔던 역사에 다시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주체를 자기배려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코가 기독교를 생각하는 방식은 오직 권력, 그것도 권력기술에 한정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Jeremy Carrette(2000)가 말하듯이 푸코는 종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속할 수도 또는 해방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푸코가 종교에 의해 축발된 1979년의 이란혁명을 응호한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푸코가 기독교에 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푸코가 문제시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헬레니즘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자기배려에 의한 인간 주체의 형성이 초기 기독교에는 그렇지 않다가 4, 5세기가 되면서 점차 자기해석, 자기고백, 자기소멸에 의한 인간 주체의 (탈)형성으로 나아간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체-진리의 관계가 현대의 행정권력 기술의 토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푸코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Ojakangas(2012)는 현대의 생명권력의 계보학적 뿌리는 고대 그리스-로마에 있다고 푸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으며, Mayes(2010)는 푸코가 기독교 사목의 형성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애써 사목권력의 폭력성을 감추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한다. Brossat(2015)은 푸코의 사목모델에서 양떼의 위치가 기독교 성립 전후로 크게 변하는 사실을 푸코가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푸코의 연구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문제의식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권력-주체-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을 때 그의 사목권력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역사”的 관점에서 그 중요도가 전혀 감소하지는 않는 것이다.

본 연구는 푸코와 푸코를 연구한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현대 행정권력의 신학적 계보를 추적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의 역사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지닌 학자들에게 본 연구는 역사의 한 면만을 확대시켜 이를 전체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로 비추어질 수 있

다. 행정권력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 푸코의 권력에 대한 방법론 역시 일면적인 것으로 비추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사목권력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그 동안 우리의 인식영역 밖에 있다고 믿어졌던 신학적, 철학적 논의를 행정학 연구에 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논의가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합리적 논리로 뒷받침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목권력과 그것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푸코의 주장은 그의 저술, 강연, 대학강의, 인터뷰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기독교 초기의 개인윤리에 대한 독자적 탐구를 푸코가 약속했지만 그의 이론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는 미완성인 체로 남아있는 사목권력에 대한 푸코의 연구를 완성시키려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감벤의 연구의 예에서 보듯이, 푸코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역사와 부합하지 않는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문수. 2013. “서양 근대 행정개념의 기원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아렌트, 푸코, 아감벤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129-162.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박진우 역(2009).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 _____. 2011. *The Kingdom and Glory: For a Theological Genealogy of Economy and Government*. Trans. by Lorenzo Chies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 역(2002).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Baez, Benjamin. 2014. *Technologies of Government: Politics and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rossat, Alain. 2015. “Human Pastorate and 'La Vie Bête'.” In Fuggle, Lanci, and Tazzioli (eds.) *Foucault and the History of Our Present* (pp.

- 131-141), New York: Palgrave.
- Carrette, Jeremy. 2013. "Foucault, Religion, and Pastoral Power." In Falzon, O'Leary, and Sawicki (eds.) *A Companion to Foucault* (pp. 368-383), West Sussex: Blackwell Publishing.
- _____. 2000. *Foucault and Religion: Spiritual corporality and political spirituality*. London: Routledge.
- Catlaw, Thomas. 2007. *Fabricating the Peopl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the Biopolitical State*.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Chrusew, Matthew. 2014. "Pastoral Counter-conducts: Religious Resistance in Foucault's Genealogy of Christianity." *Critical Research on Religion*, 2(1): 55-65.
- _____. 2013. "Suspicion and Love." *Foucault Studies*, 15: 9-26.
- _____. 2010. "The Pauline Ellipsis in Foucault's Genealogy of Christianity." *Journal of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11(1): 1-15.
- Dreyfus, Hubert & Paul Rabinow. 1982. *Micha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Harmondsworth : Penguin. 오생근 역(2011).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 _____.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 Allen Lane. 이규현 역(2004).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서울: 나남.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 L. Dreyfus & R. Rabinow,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pp. 208-225), Brighton : Harvest Press.
- _____. 1985.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The Random House. 이규현 역(2004).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
- _____. 1988. "Politics and Reason." In A. Sheridan (ed.)

- Michael Foucault: *Politics, Philosophy, Culture* (pp. 57-85),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7a. "The Ethics of the Concern of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Paul Rabinow (ed.) *Micha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pp. 282-302),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1997b. "On the Genealogy of Ethics." In Paul Rabinow (ed.) *Michael Foucaul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pp. 253-280),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2003a. *Abnormal: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4-1975*. Trans. by Graham Burchell. London: Verso.
- _____. 2003b.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1976*. Trans. by David Macey. New York : Picador. 김상운 역(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5-76년』, 서울: 난장.
- _____. 2005. *The Hermeneutics of the Subject: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81-1982*.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 Palgrave.
-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 Palgrave. 오르트망 역(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서울: 난장.
- Lemke, Thomas. 2011.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Mayes, Christopher. 2010. "The Violence of Care: An Analysis of Foucault's Pastor." *Journal of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11(1): 111-126.
- McGushin, Edward. 2007. *Foucault's Askesis: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ical Lif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Nilson, Jacob & Sven Olov Wallenstein. 2013. *Foucault,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Huddinge: Södertörn Philosophical Studies 14
- Ojakangas, Mika. 2012. "Michel Foucault and the Enigmatic Origins of Bio-politics and Governmentalit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

- 25(1): 1-14.
-
- _____. 2005. "Impossible Dialogue on Bio-power." *Foucault Studies*, 2: 5-28.
- Prozorov, Sergei. 2007. *Foucault, Freedom and Sovereignty*.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 Senellart, Michel. 2007. "Course Context." In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pp. 369-402), New York : Palgrave.
- Siisiäinen, Lauri. 2014. "The Shepherd Meets the Divine Economy: Foucault, Agamben, and the Christian Genealogy of Governance." *Journal of Cultural and Religious Studies*, 14(1): 53-69.
- Taylor, Dianna. 2011. "Practice of the Self." In Dianna Taylor (ed.) *Michael Foucault: Key Concepts* (pp. 173-186), Durham: Acumen